

시장질서 교란행위 규제 설명회(15년6월30일)

사전 질의사항에 대한 답변

(금융감독원 자본시장조사국)

I 공통사항

질문 : 시장질서 교란행위와 관련하여 특정 임직원에게 과징금이 부과되는 경우, 회사에 대하여도 제재(예 : 기관주의, 기관경고 등)를 할 예정인지?

답변 : 특정 임직원에게 과징금이 부과되는 경우라면, 시장질서 교란행위로 인해 회사에 별도의 제재가 부과되지 않습니다.

시장질서 교란행위 규제는 “시장질서 교란행위자”를 규제합니다.

질문 : 직원 또는 투자자의 불공정거래 행위가 발견된 경우 회사는 어떠한 절차를 밟아 조치하여야 하는지요?

답변 : 직원이든 투자자이든 불공정거래 행위를 발견한 경우 금감원에 적극적으로 알려주셔야 할 것이고,

기존 불공정거래에 준하여 내부통제 업무 등을 수행하시면 될 것으로 보입니다.

II 정보이용 교란행위

질문 : 애널리스트가 미공개정보를 수령하여 회사 직원에게 전달한 경우 정보를 수령한 회사 직원은 1차 정보수령자에 해당하는 것인지? 아니면 전달 받은 순서에 따라 2차 또는 다차 정보수령자에 해당하는지?

답변 : 애널리스트가 소속 회사의 업무를 위해 정보를 수령하여 이를 같은 회사 직원에게 업무상 전달하였다면 직원은 1차 정보수령자가 됩니다.

반면, 애널리스트가 업무와 무관하게 친분이 있는 직원에게 개인적으로 이용하게 할 목적으로 정보를 전달하였다면, 해당 직원은 2차 정보수령자가 됩니다.

물론, 애널리스트에게는 정보를 이용하게 할 의사가 있어야 하고, 직원은 정보를 이용하여 매매를 한 경우에 규제대상이 될 것입니다.

질문 : 증권회사 임직원이 사용하는 이메일이나 메신저를 통하여 미공개 중요정보 등이 전파/확산되는 것을 막기 위하여 어떠한 조치를 취하여야 회사가 적절한 사전 조치를 취한 것으로 인정될 수 있는지?

답변 : 기존 불공정거래행위를 예방하기 위한 내부통제 기준에 따라 모니터링 업무 등을 수행하면 될 것으로 보입니다.

추가적으로 금융감독원이 제시한 '11.3월 「금융회사의 정보통신수단 등 전산장비 이용관련 내부통제 모범규준」을 참조하시면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.

질문 : 임직원이 지득한 중요정보에 대해서 준법감시인 또는 준법감시인이 지정한 자에 보고 및 집중하여 중요정보의 유통행위 및 임직원의 불공정한 거래행위 등을 관리하여야 하는지?

질문 : 중요정보를 지득한 모든 임직원이 회사의 관리대상인지?

공통답변 : 구체적인 관리방식이나 범위는 회사의 규모, 상황, 업무특성 등에 따라 다를 것입니다.

따라서 해당 회사별로 중요정보 접근가능성이나 이용가능성 등을 감안하여 관리를 하여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.

질문 : 사내외 정보의 유통행위를 점검하기 위하여 사내외 회의 및 통신에 대해 점검하는 경우 전수조사는 불가한 것이 현실인데 샘플 조사를 하는 경우 내부통제와 관련된 준법감시인의 책임을 면할 수 있는지?

답변 : 전수조사를 할지 샘플조사를 할지 여부는 회사의 규모 및 상황 등에 따라야 할 것으로 보이고,

어떤 방식을 취하든지 간에 조사 자체가 성실히 이행된 사정이 명확하다면 준법감시인에게 책임을 묻기는 곤란할 것으로 보입니다.

질문 : 자본시장법 시행령 제201조에 따르면 미공개정보 기간과 시간을 정하고 있습니다. 예로 신문 또는 전자전달매체를 통해 발표된 내용을 인지한 후 시행령에서 정한 시간을 경과하지 않고 매매를 하게 된 경우는 시장교란행위로 과징금을 부과 받는지요?

답변 : 내부자 등으로부터 받은 정보가 아닌, 신문 또는 전자전달매체를 통해 비로소 알게 된 정보는 규제 대상이 아닙니다.

정보를 직접 생산한 자, 이들로부터 정보를 수령한 자 등이 주지기간의 적용을 받습니다.

교란행위의 경우 주지기간에 대하여 별도의 정함은 없으나 시행령 제201조를 참조해볼 수는 있을 것입니다.

질문 : 시장정보(리서치정보 등)에도 내부정보와 같은 주지기간이 요구되는지 여부? (관련조문 : 시행령 제201조)

답변 : 시장질서 교란행위는 법령상 주지기간이 없으므로 정보공개시점이 불명확해 보입니다.

이 경우 시행령 제201조를 참조하여 공개시점을 판단할 수도 있을 것이나, 공개 즉시 정보의 중대성이 약해지는 것이 객관적으로 명백한 사안이라면 정보의 중대성이 인정되지 않아 규제 대상에서 제외될 수도 있을 것입니다.

질문 : 증권사가 자문사로부터 종목정보를 받을 때 코멘트 내용이 (향후)미공개정보 이용행위로 판정된 경우 누구에게 책임이 있는 것인지? 이 경우 해당 행위를 막기 위해 회사는 사전적으로 어떤 조치를 취하여야 하는 것 인지?

질문 : 미공개 중요정보인지를 인지하지 못한 상황에서 단순하게 전달만하는 경우에도 시장질서 교란행위가 적용되는지 여부?

공통답변 : 자문사가 미공개정보를 이용하게 할 의도로 코멘트를 하고, 증권사가 미공개정보인 정을 알면서 정보를 받아 이용하였는지 여부에 따라 위반 여부가 결정될 것입니다.

질문 : 펀드매니저 A가 비상장회사 X에 대한 리서치 중 X의 상장회사 Y에 대한 최근 납품 실적이 증가한 것을 근거로, A가 자신이 운용하는 펀드에 Y의 주식을 편입하는 경우 시장질서 교란행위에 해당할 소지가 있는지?

답변 : 시장질서 교란행위 규제 대상정보가 되려면 그 정보가 지정 금융투자상품의 매매 등 여부 또는 매매 등의 조건에 중대한 영향을 줄 가능성이 있어야 합니다.

말씀하신 사실관계에 따르면 정보의 내용이 매매 등에 중대한 영향을 줄 정도로 구체화 된 것인지 다소 불명확해 보입니다만,

해당 펀드매니저가 Y사 매출증가와 관련한 정보를 내부자 등으로부터 지득한 경우가 아니라면 규제하기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.

다만, 이 경우에도 펀드매니저는 타인에게 정보를 이용하게 해서는 안 됩니다.

질문 : 금융투자회사가 금융투자업규정 제4-20조 제1항 제4호의 규정에 따라 주문에 관한 정보를 제공함에 있어 별첨 비조치 의견서(2011-비조치-01, 2011.2.22 공개)의 정보제공 기준에 따라 제공한 경우 이를 수령한 제3자가 해당 정보를 목적 외 이용하여 매매를 하거나 제3자에게 이용하게 한다면 금융투자 회사에 책임이 있는지 여부?

답변 : 금융투자업규정과 비조치 의견서의 기준에 따라 정보를 제공한 경우라면 규제대상이 될 가능성이 매우 낮습니다.

또한 금융투자회사가 정보를 이용하게 할 의사 없이 정보를 주었다면 금융투자회사는 규제받지 않을 것입니다.

Ⅲ 시세관여 교란행위

질문 : 투자자가 알고리즘 프로그램을 자체 구입하여 증권회사와 연결하여 사용하다가 시세관여 교란행위가 발생한 경우 누구를 제재하는지?

답변 : 시장질서 교란행위 규제 대상은 행위자이므로 프로그램을 직접 실행한 투자자가 행위자로서 규제대상이 될 것입니다.

질문 : 증권회사가 알고리즘 거래 투자자에게 시장질서 교란행위가 발생하지 않도록 알고리즘 프로그램의 적정성을 확보토록 고지하고 관련 증빙을 보관하는 경우 증권회사가 면책을 받을 수 있는지?

답변 : 개별 사안마다 다를 것이나, 말씀하신 사항을 포함하여 회사가 교란행위를 예방하기 위해 모니터링 및 관련 규정 준수 등 성실하고 진지한 노력을 하였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될 것으로 보입니다.

<p>질문 : 시장질서 교란행위에 해당하는 알고리즘 거래 관련 대량제출호가 기준은 어떻게 설정하여 모니터링 하여야 하는지?</p>
<p>질문 : 시장질서 교란행위에 해당하는 반복적인 정정/취소 기준은 어떻게 설정하여 모니터링 하여야 하는지?</p>
<p>질문 : 손익 이전 또는 조세 회피목적의 거래에 대한 구체적인 내부통제시스템은 어떻게 구축해야 하는지?</p>
<p>질문 : ELS 헤지 과정에서 주가를 인위적으로 하락시키는 주문에 대한 구체적인 기준은 어떻게 설정하여 모니터링 하여야 하는지?</p>

공통답변 : 구체적인 모니터링 기준은 거래소 및 협회가 제시한 기준 등을 일용 참조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.

금감원은 기존 불공정거래의 규제 공백을 메우는 용도로 시장질서 교란행위 규제를 활용할 계획이고 비난가능성이 높은 악의적인 행위를 주된 규제 대상으로 삼을 예정입니다.

**질문 : 허수성 호가제출 행위 또는 가장매매의 의미가 거래소
시장감시규정 제4조제1항제5호, 제9호의 행위와 같은지?**

답변 : 행위내용만 보면 유사합니다. 다만, 거래소 규정 위반사항이 아닌 법 위반 사항인 만큼, 실제 규제를 하기 위해서는 그에 상응하는 불법성이나 조치의 필요성이 인정되어야 할 것입니다.

**질문 : 위탁계좌에 귀속되는 부당이득액을 수탁자의 과징금액
산정에 반영할 것인지 여부?**

답변 : 법에서 위반행위와 관련된 거래로 얻은 이익을 부당이득으로 정하고 있습니다.

따라서 위탁계좌에 귀속된 이득액은 시장질서 교란 행위와 관련된 거래로 얻은 이익으로서 수탁자의 과징금 산정시 반영되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.

질문 : 주문실수를 노리고 상한가 또는 하한가 등의 가격에 대량이 아닌 주문을 사전에 깔아놓는 행위 또는 옵션의 외가격에 주문을 깔아놓는 행위 등*이 시장질서 교란행위 규제대상이 될 수 있는지 여부?

* [예시1] 단일가 호가시간에 매수주문은 하한가에, 매도주문은 상한가에 소량의 주문을 제출하는 행위

[예시2] 장내 이상주문을 감지하는 프로그램을 실행하는 행위

답변 : 시세관여 교란행위가 되기 위해서는 체결가능성이 희박한 주문을 대량으로 제출하여야 하므로, 소량 주문 제출은 규제하기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.

다만, 어느 정도의 주문수량이 대량(소량)인지가 문제될 것인데, 이는 당시 거래량 등 시장상황에 따라 판단될 수 있습니다.

한편, 주문실수를 노리고 주문을 사전에 깔아 놓는 행위는 그 자체만으로는 위반행위가 아니고, 주문수량이 대량으로서 시세에 영향을 미치거나 미칠 우려가 있었는지에 따라 위반 여부가 결정될 것입니다.

장내 이상주문을 감지하여 이상주문을 받아 체결시키는 행위 역시 체결가능성이 희박한 주문제출로 볼 수 없어 규제하기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.